

국제회계기준의 시대 : 하나의 기준! 그리고 하나의 회계?

김 유 찬 |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 uchanacct@hanyang.ac.kr

비록 국가단위 수준에서 진행되었던 논의였지만, 영·미 회계사(history of accounting)는 회계기준에 대한 동일성(uniformity)¹⁾ 추구하고 준수 의무가 정부개입 이전부터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발전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회계정보가 이해 당사자들 간 계약체결의 기저가 되었음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재무보고의 ‘언어’에 대해 합의를 추구하고자 했고, 정보의 외부성(informational externality)을 완화하고자 그것을 준수하는데 동의했다는 사실은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고 생각된다.

회계기준에 대한 합의와 의무적 준수에 대한 논의는 이제 국가라는 단위를 넘어 국제 수준으로 확대·전개되고 있다. 최근 국가의 경계를 넘어 진행되고 있는 시장통합현상은, 과거 국가 수준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듯, 회계기준의 동일성 추구하고 준수 의무가 국제 수준에서도 중요한 사항이 되었음을 인식하게 한다. 물론,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유럽연합이 마주했던 정치적 상황과 대규모 회계부정(예; Enron)에 대한 반성과 같은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흐름을 고려해 볼 때, 국제회계기준의 필요성은 자연스러운 역사의 동력(dynamics)으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국제회계기준은 현재 100개가 넘는 국가에 의해 채택되었다. 한국의 경우, 2007년 국제회계기준의 전면도입에 관한 논의를 시작으로 2011년부터는 모든 상장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의무 적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의

1) 여기서 동일성이라는 말은 정보의 발행자가 하나의 동일한 지침을 적용하여 정보를 발행하는 개념을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이것은 세부적인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규칙 중심적 속성, 혹은 근본적 원리의 이해를 요구하는 원칙 중심적 속성과 같은 개념을 일컫는 말이 아니다.

도입은 기본적으로 정보의 비교가능성, 투명성의 개선과 시장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하나의 회계”라는 슬로건은 국제회계기준의 명확한 희망이다. 그러나 여러 실증연구들은 하나의 기준이 하나의 회계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해보면, 하나의 기준을 단순히 공유한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회계를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무리한 말도 아니다. 왜냐하면, 각국의 정치, 법제도가 상이하다는 간단한 직관으로부터도 그러한 주장은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미 법체계의 국가들과 대륙법체계의 국가들이 서로 다르고, 아시아 국가들 또한 그들과 상이하다. 따라서 각국의 차별성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관련하여 상이한 반응과 상이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주장은 자명한 것일 지도 모른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에 내포된 ‘재량과 판단’에 근거하여, 경영자들이 의도하고 있을 상이한 회계정책이 그러한 차이의 원인으로 작용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 있어, 시장·정치·제도와 같은 제 요소가 본질적으로 지역적(local)이라는 것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논의의 결론이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회의론으로 맺어지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아마도 그것은 질(quality) 높은 회계, 그리고 ‘하나의 회계’를 위해 남겨진 것들이 많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1. 국제회계기준의 특성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에 의해 발행되고 있는 회계기준을 일컫는 말이다. IASB는 세계 자본시장의 참여자들과 기타 이용자들이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회계기준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IASB는 고품질(high quality)의 비교가능성이 높은 회계기준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즉, 회계정보가 갖추어야 할 정보적 특성으로 고품질과 비교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고품질과 비교가능성에 대한 이해는 곧 국제회계기준의 특성을 이해하는 지름길이 되어줄 것이라고 본다.

고품질의 회계기준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정보수요의 관점에서 회계품질을 바라본 Ray Ball의 설명에 따르면, 높은 품질의 재무보고는 다음의 네 가지 속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1) 경제적 실재성에 대한 표현의 정확성, (2) 경영자의 이익조작에 대한 낮은 잠재력, (3) 적시성(경제적 가치를 적시에 반영하는 것), (4) 이익/손실의 비대칭적 적시성(Sudipta Basu의 보수주의 개념)이 그것이다. IASB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정보의 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회계기준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국제회계기준이 적시성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공정가치회계(fair value accounting)는 경제적 이익과 손실에 관한 정보를 보다 적시성 있게 반영하는 회계원칙을 가리키는데, 적시성의 강조로 인해 공정가치회계는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특징의 하나로 인식되게 되었다. 공정가치 회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반론이 존재한다. 하지만, IASB는 보다 많은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공정가치회계를 강조하는 것이 역사적 원가회계를 강조하는 것보다 실익이 크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교가능성은 국가 간 회계의 차이를 줄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 비교가능성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회계기준에 대한 공통의 셋(common set)을 공유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공통의 셋은 Ray Ball이 언급하고 있는 “기능적 완전성(functional completion)”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즉, 일반화된 회계기준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들에 유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속성은 계약체결의 효율성과도 관련이 깊다. 가능하기만 하다면, 회계기준은 미래에 마주할 수 있는 상황들을 사전적으로 가급적 많이 구체화할수록 계약체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하지만, 발생 가능한 상황들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회계기준을 모두 개발하여 둔다는 것은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요구하며, 가능하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국제회계기준이 소위 원칙중심회계를 지향하게 하는 이유이다. 원칙중심회계는 규칙중심회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써, 회계기준을 일반적 수준에서 제시하여 특정한 이슈에 대해 모호성(ambiguity)을 견지하게 하는 회계를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성격은 곧 경영자와 회계 감사인으로 하여금 전문가적 판단에 기초한 책임을 요구한다는 특성을 갖게 한다.

2.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기대와 우려

고품질과 비교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은 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적으로 국가 간 회계기준의 차이가 줄어든다는 사실은 정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투명성의 개선은 정보비대칭성을 완화시켜 투자자의 정보위험을 감소시키며, 주주와 경영자 혹은 채권자와 경영자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계약 체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점은 기업의 자본비용 감소에 기여할 것이므로, 이로 인해 시장의 효율성 개선과 국가 간 거래(예; 금융거래의 확대, 기업분할 및 인수합병 등)의 활성화를 기대하게 한다.

한편으로 국제회계기준이 갖고 있는 잠재적 위험을 우려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공정가치회계는 경제적 사건을 매우 즉각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지만, 측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잡음(noise)이 정보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무시하기 힘든 단점을 갖고 있다. 만약 활성화된 시장정보의 획득에 어려움이 있어, 모형에 의한 평가방법(mark-to-model)을 적용해 공정가치를 평가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정보 이용자들이 가치관련(value-relevant)정보와 경영자의 의도/모형의 불완전성에 기인한 잡음을 구별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공정가치회계가 정보의 변동성(volatility)을 높여준다는 점은 경영자의 이익조정 의도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이익유연화를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도 되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변동성은 이익의 예측을 어렵게 한다는 단점이 될 수 있다.

원칙중심회계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유연성은 경영자와 회계 감사인으로 하여금 회계기준의 적용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전문가적 판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유연성이 경영자의 사적유인과 분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3. 실증적 증거들

국제회계기준은 그것이 표명하고 있는 목적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 이것은 분명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을 마주한 국가들이 가졌을 공통된 질문이었을 것이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매우 상반된 견해가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은 국제회계기준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유연성”이다. 엄격한 이론모형과 축적된 지식이 많지 않다는 점은 혼재된 주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질문은 결국 실증의 문제로 귀착되었다고 보아야겠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관련하여, 회계 실무자들과 학계의 주된 관심은 이익의 질(earnings quality)의 개선과 그것의 시장효과로 요약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이익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하여 실증적 증거들은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²⁾ 예를 들어, 소폭손실 회피유인에 대한 Jeanjean & Stolowy(2008)의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이후에도 이익조정 유인이 감소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이익의 질에 대한 측정치를 활용한 Barth, Landsman & Lang(2008)의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이익의 질의 전반적인 개선에 도움을 주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혼재된 결과는, 비록 회계기준이 동일성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경영자의 사적유인이 적절히 제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단순히 고품질의 회계기준이 외부적으로 주어진다고 해서, 재무보고의 질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의 기준이 하나의 회계로 귀착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개별 국가들의 정치적, 법적 전통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Ball, Kothari, & Robin(2000)과 Ball, Robin & Wu(2003)는 이러한 차이들에 관해 연구를 진행했다. 분석은 주로 영·미 법체계(common-law)의 국가, 대륙법체계(civil-law)의 국가, 아시아 국가(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에 대한 비교에 관한 내용이다. 영·미 법체계는 시장 지향적이며 소송에 대해 적극적이고, 투자자들이 외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비해, 대륙법체계는 시장 지향성이 약하며 소송에

2) 물론 혼재된 결과는 이익의 질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연구 설계는 어떻게 구성할지, 그리고 이익조정이 예측되는 상황을 어떻게 식별할 것인지에 대한 상이한 견해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혼재된 결과는 결국 관련 실증적 현상이 강건하지 못하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겠다.

대해 소극적이고, 내부자 접근 모형(insider access model)에 따라 작동하는 경향이 높다. 아시아 국가(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는 과거의 역사적 맥락에서 영·미 법체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인식되지만, 국가별 독자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영·미 법체계 국가의 손실반영 적시성³⁾은 비교적 높은 반면, 대륙법체계의 국가와 아시아 국가의 손실반영 적시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제도와 같은 회계환경의 차이가 회계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회계기준과 보고이익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 매우 혼재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면, 국제회계기준의 시장효과에 대한 증거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Armstrong, Barth, & Riedl(2010)과 전영순·정도진(2009)의 연구를 살펴보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공시에 대한 시장반응은 국내·외 모두 대체로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Ashbaugh & Pincus(2001)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재무 분석가의 예측정확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본적으로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중요성과 그것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연구들은 도입초기의 효과에 집중되어있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성급한 결론 보다는 관련 사항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

4. 국내 조기도입 기업의 특성

국제회계기준의 국내 조기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총 61개 기업(유가증권상장기업 33개, 코스닥기업 28개)이 국제회계기준을 조기 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내·외의 선행연구의 혼재된 주장과 연구결과는 국내 조기도입 기업의 특성분석에 대한 호기심을 제공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여기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을 조기에 도입한 국내 유가증권상장법인을 대상으로, (1) 주요 재무비율의 변화와 (2) 재무보고에 대한 경영자의 사적동기에 관한 이슈를 검토해보기로 한다.⁴⁾

3) 적시성 있는 예상손실의 반영은 일반적으로 높은 회계품질의 대용치로 인식된다. 보수주의회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상이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으나, 손실/이익의 비대칭적 적시성은 경영자의 사적정보의 전달에 유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높다.

4) 분석대상 표본의 수는 32개이다. 이것은 국제회계기준을 조기 도입한 33개 유가증권상장기업 중, 2010년에

〈표 1〉은 조기도입 기업의 도입연도와 직전연도의 주요 재무비율에 대한 평균과 쌍체검정(paired t-test)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은 직전연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아니었다. 하지만 유동자산의 증가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관련한 금융자산 양도규정의 강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학계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의 조기도입과 관련하여 기업들이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해 재평가모형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하지만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오히려 소폭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예상과는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국내의 회계기준은 이미 2008년도에 재평가모형을 기존 회계기준의 틀 속에서 받아들인 바가 있다. 즉, 재무구조의 개선효과는 국제회계기준의 조기도입 시점 이전에 장부에 모두 반영되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금융자산의 양도규정의 강화는 부채의 증가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는데, 이로 인해 재평가 효과가 상쇄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매출채권회전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 역시 금융자산의 양도규정의 강화에 따른 유동자산의 증가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수익성 지표와 관련하여, 매출총이익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소폭 증가를, 총 자산이익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소폭 감소를 보여주었다. 물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수치였지만, 그것의 함의를 찾아본다면, 매출의 경우 계정재분류의 효과가 매출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종업원의 급여 및 퇴직급여에 관한 규정은 매출원가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국제회계기준의 손상차손의 인식에 관한 규정은 순이익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상장되어 상장 이전연도의 자료 확보가 어려운 1개 기업을 배제한 수이다. 본 분석은 간단하게 직전연도와 도입연도의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도입연도와 직전연도의 차이가 순수하게 회계기준의 변경에 기인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은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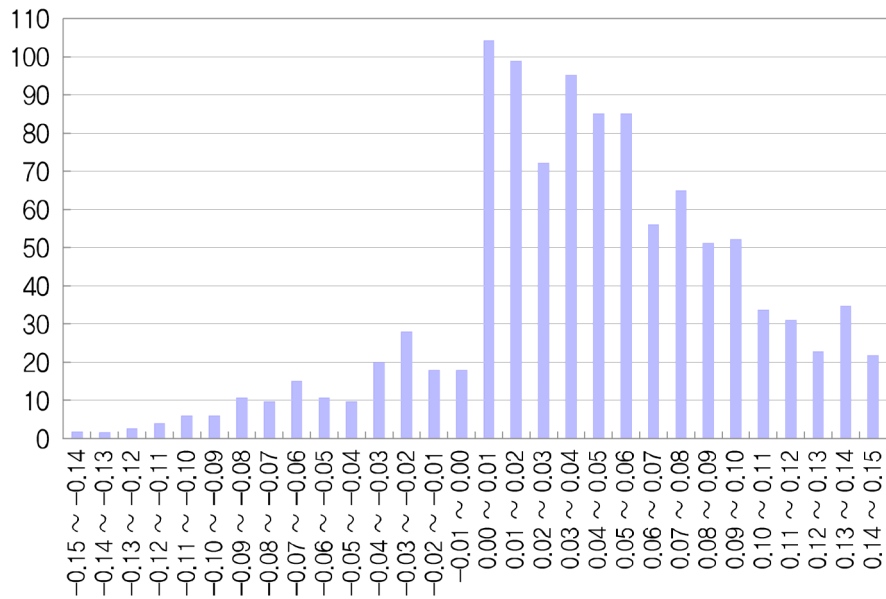
〈표 1〉 IFRS 조기도입 기업에 대한 도입연도·직전연도의 주요 재무비율 분석⁵⁾

재무비율	표본수	IFRS 도입 연도	IFRS 도입 직전연도	t 통계량
유동비율	32	1.826	1.438	0.817
당좌비율	32	1.571	1.164	0.861
부채비율	32	1.255	1.184	0.459
매출채권회전율	29	7.889	10.452	-2.786***
유형자산회전율	31	8.973	9.630	-0.940
매출총이익률	28	0.221	0.185	1.295
총자산이익률	31	0.038	0.048	-0.6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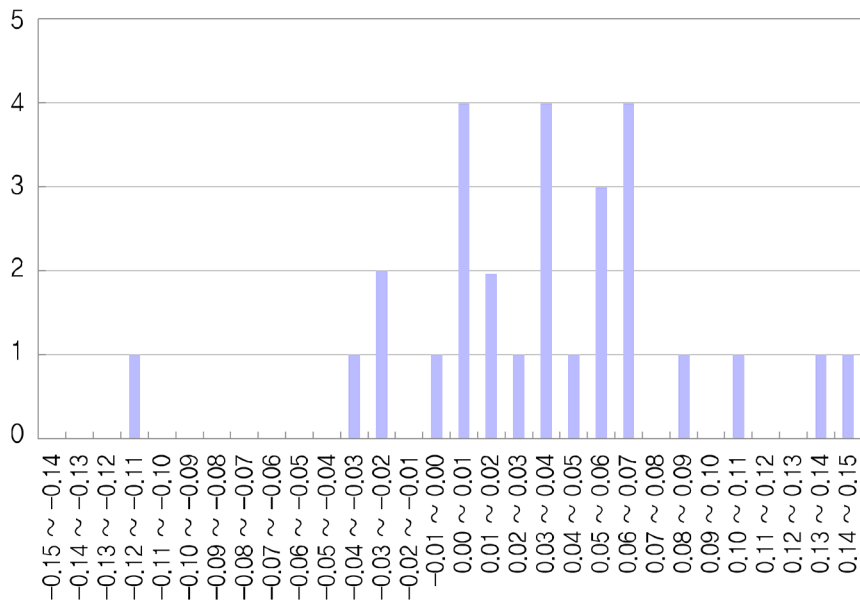
국제회계기준의 조기도입과 관련하여, 경영자의 개인적 동기에 기인한 보고유인이 존재 하는지를 평가해보기 위해 이익조정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한 가지 상황을 분석해보았다. “소폭손실의 회피”는 이익조정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표적인 상황이다. 소폭손실의 회피현상은 순이익구간별 분포 상에서 전체 기업의 이익분포가 좌·우 비대칭적으로 형성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보다 엄격히 말하면, 0을 중심으로 좌·우 단절된 분포가 관찰되는 현상이다. 아래의 〈그림 1〉은 2009년과 2010년에 해당하는 전체 기업의 순이익구간별 분포를 보여준다.⁶⁾ 기존의 선행연구가 관찰해오던 바와 같이, 0을 중심으로 분포의 좌·우가 비대칭적으로 분포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실무에서 소폭손실에 대한 회피유인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는 동일한 순이익구간에 대하여 조기도입 기업의 분포를 표시한 것이다. 〈그림 1〉의 순이익구간 상에서 조기도입 기업의 빈도를 보다 명확히 식별하기 위해, 조기도입 기업이 두 번 이상의 빈도로 관찰된 구간에 대해서 〈그림 1〉에 ‘★’를 삽입했다. 〈그림 1〉에서 ‘★’ 표시의 위치를 살펴보면, 조기도입 기업의 빈도가 소폭손실 구간보다는 소폭이익 구간에 보다 많이 분포해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관찰만으로 국제회계기준의 조기 도입에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순이익의 특성이 조기도입 결정의 내생변수가 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관찰은 향후 보다 정교한 분석과 구체적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매출채권회전율, 유형자산회전율, 총자산이익률의 계산에 있어, 재무상태표 상의 계정에 대한 정보는 기초 잔액을 이용하였다. 재무비율의 표본 수에 차이가 나는 것은 이유와 관련이 있다.

6) 여기서 전체기업이란 금융업종에 속하거나,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기업, 데이터베이스 상 재무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표본을 배제한 나머지를 뜻한다. 순이익 구간은 총자산이익률을 0.01간격으로 구분하여 식별하였다.



〈그림 1〉 전체기업의 순이익 구간별 분포



〈그림 2〉 조기도입 기업의 순이익 구간별 분포

〈표 2〉는 재량적 발생액 측정치를 바탕으로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을 분석한 결과이다.⁷⁾ 도입연도의 재량적 발생액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양(+)의 수준에서 음(-)의 수준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기도입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은 전체기업의 수준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량적 발생액에 대한 분석결과는 국제회계기준의 국내 조기도입과 이익조정 사이에 관련성이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표 2〉 IFRS 조기도입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 분석

	표 본 수	재량적 발생액	t 통계량
IFRS 도입 연 도	23	-0.0042	-0.321
IFRS 도입 직전연도	23	0.0005	
조 기 도 입 기업표본	23	-0.0042	0.148
전 체 기업표본	1,256	-0.0020	

요컨대, 국제회계기준의 조기도입과 관련하여, 주요 재무비율에 대한 분석결과는 도입연도와 직전연도 사이에 유의한 변화가 많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매출채권회전율만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채권회전율이 보여준 유의한 변화는 금융자산의 양도에 관한 강화된 규정의 영향력일 가능성이 높다. 순이익구간별 분석에 관한 결과는 조기도입 기업의 소폭손실 회피유인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재량적 발생액에 대한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론을 보여주지 못했다. 즉, 국제회계기준의 국내 조기도입과 관련하여, 보고이익에 대한 경영자의 이익조정동기가 존재하는지는 명확히 단언하기 어렵다.

통계적 변화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거나, 혹은 경영자 유인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해석이 아닐 수 없다. 조기도입 기업의 특성은 국제회계기준의

7) 재량적 발생액 계산에 사용된 추정모형은 다음과 같다.

$$TA_{i,t}/A_{i,t-1} = \beta_1(1/A_{i,t-1}) + \beta_2(\Delta Sales_{i,t} - \Delta REC_{i,t})/A_{i,t-1} + \beta_3(PPE_{i,t}/A_{i,t-1}) + \beta_4ROA_{i,t} + \epsilon_{i,t}$$

여기서, TA는 당기순이익에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차감한 값, A는 총자산, Sales는 매출액, REC는 매출채권, PPE는 유형자산(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 제외), ROA는 총자산이익률임.

재량적 발생액의 계산을 위한 추정치는 산업-연도별 횡단면으로 추정했다. 대부분의 관련문헌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과 같이, 추정과정에서의 편의를 줄이기 위해 산업-연도별 관측치의 수가 20개 미만인 산업-연도 표본은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최종 분석표본의 감소는 이러한 이유와 관련이 있다.

도입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관련 지표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5. 남겨진 것들

국제회계기준의 필요성과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긍정적이라는 것과는 별개로, 선행연구들은 단순히 하나의 기준이 주어진다는 것이 곧 하나의 회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혹 누군가는 국제적 정합성이라는 거창한 목표에 흥미를 느끼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미 국제회계기준이 재무보고의 기준으로 채택되었다면, 채택된 기준의 적용과 회계투명성의 개선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공정가치회계와 원칙중심회계로 대변되는 국제회계기준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투명성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식공시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시킬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수적이다. 주식으로 공시되는 정보는 원칙중심회계로 대변되는 국제회계기준에서 재무정보의 해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실제로 2009년 국내 조기도입 기업들의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재무제표 상의 계정과목 수는 감소한 반면 주식의 페이지 수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의 시대에 주식은 정보처리비용과 투명성의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재무 분석가의 목표치를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2010년 리베이트에 대한 적절한 공시를 누락시킨 델(Dell)의 사례를 생각해보면, 재무정보의 해석에 주식공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이해해볼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 하에서 사적정보가 얼마나 충분히 전달될 수 있을 것인지는 완전공시의 문제와 직결된다. 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를 비롯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다음의 것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재무보고에 대한 완전공시의 관점에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의 효과성은 독립성, 전문성, 활동성의 정도에 달려있다. 최근 국내 이사회의 실무가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서 전반적인 개선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시에 관한 문제가 있어, 이사회 혹은 이사회 내 위원회가 얼마나 그에 맞게 적절히 구성되어있으며,

그들에 의해 재무보고에 대한 검토·감시가 얼마나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재무보고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범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이후, 연결재무제표는 주 재무제표가 되었다.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는 개별 기업에 대해서만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연결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로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연결실체 전체로 확대 적용될 수 있을 때 그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 또한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아가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보고서가 감사(audit)가 아닌 검토(review)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또한 이에 맞추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에 대한 판단은 분명 비용-효익(cost-benefit) 간 균형의 관점에서 재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외부회계감사제도에 대해서도 고려사항이 존재한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관련하여 임석식·김경태·이영한(2009)이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회계 감사인들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이후 감사위험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느끼고 있는 부담에는 회계 오류에 대한 책임확대와 연결재무제표 공시체계에서 타 감사인의 활용 문제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회계 감사인의 감사가 안정적이고 책임 있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고려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관련하여 국내 회계기준 제정기구 역할의 재정립 또한 논의될 필요가 있겠다. IASB는 국가단위 회계기준제정기구의 역할을 제안한 바가 있다. 국내 회계기준 제정기구는 국제회계기준의 시대에 국내 환경의 특수성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여 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회계기준의 국내 적용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무엇보다 회계 투명성 확보를 향한 가장 근본적인 제안은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 그리고 윤리에 관한 교육의 보완이 될 것이다. 규칙중심회계에서 회계 담당자나 회계 감사인이 구체적인 규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역할만을 수행해 왔다면, 원칙중심회계에서 그들은 기업과 경제, 그리고 회계에 대한 견고한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가적 판단을 내릴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판단의 근간에는 제도나 규정이 아닌 윤리가 있어야 한다.

6. 맺음말

세계화의 흐름 속에 하나의 회계는 분명한 이상(ideal)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정보의 대내·외적 신뢰성을 개선한다는 목적만을 두고서라도,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하나의 기준이 하나의 회계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 의해 강조되고 있는 바이다. 새로운 회계기준을 도입하거나 회계기준을 단순히 변경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매우 당연해 보인다. 회계기준의 변화와 함께, 기업정책, 회계제도, 회계교육을 포함하는 모든 회계환경의 변화가 함께 수반되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의 회계’가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을 시작으로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의 준수를 의무화했다. 투명성과 하나의 회계를 향한 출발이 시작되었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관련하여, 국내·외 회계실무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은 회계실무 개선을 위한 많은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줄 것이다. 이제 변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남겨진 것들’을 찾아야할 시간이 되었다.

<참 고 문 헌>

- 임석식 · 김경태 · 이영한. 2009. K-IFRS 적용의 실무적 문제점 및 대책. *회계저널* 18(2): 127-159.
- 전영순 · 정도진. 2009.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대한 주가반응. *회계와 감사연구* 49: 241-282.
- Ashbaugh, H., and M. Pincus. 2001. Domestic Accounting Standards,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the Predictability of Earnings. *Journal of Accounting Reserach* 39(3): 417-434.
- Armstrong, C. S., M. E. Barth, and E. J. Riedl. 2010. Market Reaction to the Adoption of IFRS in Europe. *The Accounting Review* 85(1): 31-61.
- Jeanjean, T., and H. Stolwy. 2008. Do Accounting Standards Matter? An Exploratory Analysis of Earnings Management Before and After IFRS Adoption.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27(6): 480-494.
- Barth, M. E., W. R. Landsman, and M. H. Lang. 2008.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Accounting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6(3): 467-498.
- Ball, R., S. P. Kothari, and A. Robin. 2000. The Effect of International Institutional Factors on Properties of Accounting Earning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9(1): 1-51.
- Ball, R., A. Robin, and J. S. Wu. 2003. Incentives versus Standards: Properties of Accounting Income in Four East Asian Countri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6(1-3): 235-270.